

『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』 일부개정(안)

1. 개정사유

「국립나주병원 환자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」 폐지 및 관계 법령 「행정서비스헌장규정」에 의거하여 관련 사항을 「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」에 통합·보완하여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위원회 기능에 환자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추가(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행정서비스헌장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1부

국립나주병원 예규 제416호

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개정(안)

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0항 "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"을 "환자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"으로 하고, 제3조제11항을 "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"으로 신설한다.

부 칙 <제416호, 2023. 5. 2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① ~ ⑨ < 생 략 > ⑩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⑪ < 신 설 >	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① ~ ⑨ < 생 략 > ⑩ 환자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